

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'함양군 · 제8962부대 3대대' 업무협약

함양군과 제8962부대 3대대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)는 지역방위와 통합방위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책임지역 상황 발생 시 지역 내 민·관·군·경·소방간 긴밀한 정보공유로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 (목적)

본 협약은 대통령 훈령 제28호 『통합방위지침』 제5조(중앙관서의 통합방위시책)에 의거 양 기관은 완벽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함양군에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 내 CCTV(AVNI 등) 영상정보 공유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설치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관련법규)

지역책임부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,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, 통합방위훈련, 정부 훈련, 테러발생, 지역책임부대가 현장 확인 또는 상황수습 등을 할 필요가 있는 재해, 재난, 구급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※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(제2019-14-222호)

제 3조 (상호 협력분야)

각 기관은 제 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1. 함양군은 CCTV 영상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진행 경과에 대해 제8962부대 3대대와 공유한다.
2. 제8962부대 3대대는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협업하여 22년 전반기 내에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을 실시한다.
3. 제8962부대 3대대 자체 예산부족 시 함양군은 CCTV 영상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제8962부대 3대대 예비군 육성지원금 중 일부를 사업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게 승인한다.
4. 함양군은 제8962부대 3대대 지휘통제실 내 CCTV 영상공유 체계 구축 시 현장확인 및 실무조언을 통해 원활한 체계 구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지원한다.
5. 제8962부대 3대대는 영상정보를 공유할 시 함양군과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영상정보를 제공 받는다.
6. 체계구축 이전까지 상황발생 시 통합관제센터 내 제8962부대 3대대 연락관을 파견하여 운용하며 CCTV 영상정보를 지원하며 군 관련 상황에 대한 정보 요청 시 보안성 검토 후 제8962부대 3대대에 자료를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군 연락관과 협조한다.

제 4조 (통합관계센터 실시간 영상정보 제공)

함양군은 영상공유체계 구축 후 아래와 같은 상황 시 지역책임부대에 실시간 영상정보를 제공한다.(AVNI 차번인식 입력포함) 다만, 상황 종료 시 회선 차단 및 영상정보 제공을 중지한다.

1. 통합방위사태 선포
2.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
3. 통합방위훈련(지상협동훈련, 대침투 종합훈련 등)
4. 정부훈련(화랑훈련, 을지태극연습 등)
5. 한·미 연합연습 등 훈련
6. 테러발생, 지역책임부대 현장 확인 및 상황 수습등을 할 필요 있는 제반상황

제 5조 (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권한)

함양군은 영상공유체계 구축 후 아래와 같은 상황 시 지역책임부대에 조작권한 (CCTV 각도 등 세부 조작) 요청을 승인한다.

1. 통합방위사태 선포
2.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

제 6조 (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)

양 기관은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,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업무상 획득 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.

1. 양 기관은 습득한 개인정보와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2. 제8962부대 3대대는 작전 및 훈련 등 공유된 영상정보를 임의 저장 및 녹화, 별도 보관 하지 않는다.
3.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.

제 7조 (발효 및 유효기간)

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지역책임부대 임무 종료 시 까지이며, 단축이 필요할 때에는 제 8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한다.

제 8조 (협약의 해지)

각 기관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,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협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하고, 이에 대해 각 기관의 대표가 동의해야 한다.


제 9조 (조정 및 개정)

본 업무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 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며, 협약의 개정은 각 기관 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.

제 10조 (협약서 보관)

각 기관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, 상기 사항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동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3월 29일

함 양 군 수
서 춘 수 

제8962부대 3대대장
중 령 백 승 우 